

## 미국 파산법상의 파산면책채무(Dischargeable Debts)와 비면책채무(Non-dischargeable Debts)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국가송무과

### I. 머리말

연방파산제도는 미연방통합법전(United States Code) 타이틀(Title) 11에서 규정되어 연방법률로서 미국 전역에 걸쳐 규범력을 발하고 있다. 각 국가마다 파산제도의 특색이 있겠으나, 미국의 파산제도는 주로 파산신청자(파산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fresh start)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연방대법원은 “연방파산제도는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채권자간에 분배시키는 것을 의도할 뿐만 아니라 주된 파산법의 목적은 불행한 채무자에게 삶의 새로운 출발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sup>1)</sup> 이러한 경제적 재출발(fresh start)정책은 파산제도의 면책(dis-

charge)제도와 중요한 연관을 갖는다.

미국의 파산제도는 연방법령과 각 주의 관련 법령, 파산절차상의 핵심제도의 개념과 효과, 파산채무자의 종류 및 파산유형에 따른 파산절차 및 효과, 국가간 파산절차 등 광범위한 연구를 요한다. 하지만, 본인이 요청 받은 법제조사 테마는 도산, 파산법상 채무자 면책 시 보호해야 할 채권의 종류 및 그에 따른 면책허가 여부 관련 법령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연방법상 ‘파산면책채권’을 키워드로 하여 파산법상의 채권(claim)과 면책채권(discharged claim), 그리고 비면책채권(exceptions to discharge)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연방법상의 파산법 구조를 개요수준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위 사항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2)</sup>



1) *Stellwagen v. Clum*, 245 U.S. 605, 616 (1918).

2)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주로 David G. Epstein & Steve H. Nickles, *Principles of Bankruptcy Law* (Thomson west, 2d ed. 2007) 과 David G. Epstein et al, *Bankruptcy(including BAPCPA): 21st Century Debtor-Creditor Law* (Thomson West, 2005)를 참조하였다.

## II. 파산제도의 연방법규성과 미연방통합법전 타이틀 11의 구성

### 1. 연방법제 및 주법의 보완

미국의 연방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에게 파산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sup>3)</sup> 따라서, 미국의 파산법은 연방법(federal law)상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연방법률은 미연방통합법전 타이틀 1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규칙은 연방파산절차규칙(Federal Rules of Bankruptcy Procedure)으로서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정 및 개정되고 있다. 파산판사의 자격과 임명에 관한 법은 연방통합법전 타이틀 28에 규정되어 있다.<sup>4)</sup>

미국 파산법은 이처럼 연방법이지만, 법원에서는 연방파산법을 적용할 때 주법에 대한 주의를 마찬가지로 기울이고 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재산권(property rights)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은 각 주(State)의 법에 의해 그 권리의 의미와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

든 주가 자신의 파산집행면제 대상재산 규정(exemption statutes)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예를 들어, 11 U.S.C. §522는 개인 채무자가 파산사건(Chapter 7, 11, 13)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파산면제재산(exemptions)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산제도는 연방법상의 제도이지만 권리의 기초적 개념, 파산집행면제 재산의 범위 또는 개인적 행위 및 소송(individual action) 등의 일정부분에서 주법(state law)에도 의존하고 있다.<sup>6)</sup>

### 2. 미연방통합법전 타이틀 11의 구성

미연방파산법률은 타이틀 11편에서 9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9개의 장 중에 Chapter 1, 3, 5장은 모든 파산사건에 적용되는 공통 일반사항이다. Chapter 3에서는 파산신청 시부터 파산사건이 종료된 때까지 발생하는 파산사건의 행정적 성격의 규정이다. Chapter 5는 채무자의 재산을 복구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분배하



3) US Constitution Article 1 Section 8.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stablish a uniform rule of naturalization, and uniform laws on the subject of bankruptc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4) 한편 파산사건에 대한 사법관할권은 28 U.S.C. §1334에 따라 연방1심법원(federal district court)에게 있다(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and exclusive jurisdiction of all cases under title 11). 28 U.S.C. §151은 파산 판사들이 연방1심법원(district court)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일부는 파산법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파산법원은 분리된 법원이 아닌 미연방1심법원의 일부인 것이다.

5) 이러한 주의 규정은 개인이 파산으로 자신의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범위 내에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6) Butner v. United States, 440 U.S. 48 (1979); David G. Epstein et al, Bankruptcy(including BAPCPA): 21st Century Debtor-Creditor Law, 670면.

는 내용이다.

연방파산법률은 5가지의 별개 파산사건(Chapter 7 case, Chapter 9 case, Chapter 11 case, Chapter 12 case, Chapter 13 case)에서 두 가지 종류의 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구제는 청산(liquidation)이고, 둘째 구제는 회생 또는 구조조정(rehabilitation or reorganization)이다.

Chapter 7은 청산(Liquidation)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정리절차, 즉 가장 기초적인 구제로서 신청 시 보유된 재산의 독립적인 청산정리를 내용으로 한다. Chapter 11과 13사건은 회생(Reorganization)으로서 회생절차라고 할 수 있다.

Chapter 7 청산절차에서, 채무초과 상태로 더 이상 사업경영이 어려운 자는 미연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고, 파산법원은 Chapter 7 파산관재인(Trustee)을 즉시 임명하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하여 그 매도금으로 채권이 면책(discharge)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된다. 그러나 주식회사(corporation)나 무한책임회사(partnership)는 Chapter 7 사건의 청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과 달리 채무면책(discharge)을 받지 못한다. 오직 개인만이 Chap-

ter 7 채무면책을 받을 수 있다.<sup>7)</sup> 그러나 180일 이내에 파산사건이 기각된 개인은 채무감면을 받지 못한다.<sup>8)</sup>

Chapter 11과 13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보통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보게 되고, 파산신청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은 그대로 채무자가 보유하면서 채권자들에게 법원의 승인된 회생계획(Plan)에 따라 파산신청 이후의 소득으로부터 변제를 하게 된다. 회생계획은 오로지 일정수의 채권자들과 법원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회생계획은 채권자의 채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여 분류하고, 각 등급의 채권자의 채권은 달리 취급을 받게 된다. Chapter 11은 Chapter 7과 마찬가지로 개인, 무한책임회사(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에게 이용 가능하다. 단, Chapter 13은 1994년 법 제정 당시 \$250,000 이하의 비담보부 채무와 \$750,000 이하의 담보부 채무를 가진 '일정 소득(regular income)'을 가진 개인만이 이용 가능하다.<sup>9)</sup> 이러한 달러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섹션 104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된다.<sup>10)</sup>



7) 11 U.S.C. §727(a)(1)

8) 11 U.S.C. §109

9) 11 U.S.C. §109(e).

10) 2007년 이후 Chapter 13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기준은 비담보부 채무가 \$336,900, 담보부 채무는 \$1,010,650 였고, 2010년 4월 1일부로는 다시 비담보부 채무가 \$360,475, 담보부 채무는 \$1,081,400 로 증가되었다.

1) 미연방통합법전 타이틀 11-파산 (U.S.C. Title 11-Bankruptcy)

- CHAPTER 1-총칙(GENERAL PROVISIONS) (§§101-112)
- CHAPTER 3-파산사건 행정절차규정 (CASE ADMINISTRATION) (§§301-366)<sup>11)</sup>
- CHAPTER 5-채권자, 채무자, 파산재단 (CREDITORS, THE DEBTOR, AND THE ESTATE) (§§501-562)<sup>12)</sup>
- CHAPTER 7-청산(LIQUIDATION) (§§701-784)
- CHAPTER 9-소도시 채무조정(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901-946)
- CHAPTER 11-회생(REORGANIZATION) (§§1101-1174)
- CHAPTER 12-일정한 연수입을 가진 농업 및 어업 종사자의 채무조정(ADJUSTMENT OF DEBTS OF A FAMILY FARMER OR FISHERMAN WITH REGULAR ANNUAL INCOME) (§§1201-1231)

- CHAPTER 13-정기적인 수입을 가진 개인의 채무조정(ADJUSTMENT OF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 (§§1301-1330)
- CHAPTER 15-부속규정 및 기타 국가간 파산사건(ANCILLARY AND OTHER CROSS-BORDER CASES) (§§1501-1532)<sup>13)</sup>

2) 미연방파산절차 규칙(Federal Rules of Bankruptcy Procedure)(2009)<sup>14)</sup>

28 U.S.C. §2075에 따라 미연방대법원은 파산절차규칙을 제정하였다. 파산절차규칙은 10개의 파트로 나뉘어지며, 각 파트는 파산절차의 각기 다른 국면을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 규칙의 Part 1의 Rule 1002부터 1019까지는 오로지 파산사건의 개시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PART I. 사건개시: 파산신청 및 구제명령과 관련된 절차(COMMENCEMENT OF CASE: PROCEEDINGS RELATING TO PETITION AND ORDER FOR RELIEF)



- 11) Chapter 3는 사건의 개시, 파산관련 공무원, 행정절차(채권자회의, 통지, 채무자 검사, 자기부죄 및 면책 등), 행정적 권한으로서 적정보호(adequate protection), 자동청구정지(Automatic Stay), 재산의 이용, 매각, 임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12) Chapter 5는 대단히 중요한 채권자 채권신고, 법원의 채권승인(allowance), 채권자 채권의 우선순위, 파산절차상 채무자의 의무, 파산제외재산(exemption), 비면책채권(exceptions to discharge), 면책의 효과(effect of discharge) 등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13) 본 Chapter 15은 2005년 미연방의회가 파산관련 국제기준을 설정하면서 첨부시킨 것이다. 본 Chapter는 국가간의 파산에 관한 국제모델법(UNCITRAL이 1997년 제정)을 채택한 것이다.
- 14) 2009년 12월 1일의 연방파산절차규칙 개정부분을 반영함.

PART II. 파산관리인 및 행정조치; 통지; 회의; 검사; 선출; 변호사 및 회계사(OFFICERS AND ADMINISTRATION; NOTICES; MEETINGS; EXAMINATIONS; ELECTIONS; ATTORNEYS AND ACCOUNTANTS)

PART III. 채권 및 채권자 및 형평상의 이익보유자에 대한 분배; 파산회생계획(CLAIMS AND DISTRIBUTION TO CREDITORS AND EQUITY INTEREST HOLDERS; PLANS)

PART IV. 채무자: 의무와 이익(THE DEBTOR: DUTIES AND BENEFITS)

PART V. 파산법원 및 법원행정관(BANKRUPTCY COURTS AND CLERKS)

PART VI. 파산재단의 재산복구 및 청산(COLLECTION AND LIQUIDATION OF THE ESTATE)

PART VII. 당사자절차(ADVERSARY PROCEEDINGS)

PART VIII. 연방1심법원 또는 파산항소위원회(APPEALS TO DISTRICT COURT OR

BANKRUPTCY APPELLATE PANEL)

PART IX. 총칙(GENERAL PROVISIONS)

PART X. 미연방파산관재인(UNITED STATES TRUSTEES) [ABROGATED]

## III. 채권(채무)의 면책(Discharge)

### 1. 파산법상 채권(claim)과 면책의 개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통하여 채권자로부터 부채에서 해방되는 것을 면책(Discharge)이라 한다.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러한 면책은 채무자의 ‘fresh start’를 위한 중요한 법률효과라고 볼 수 있다.

Chapter 7 사건에서 채권자의 채권만족은 파산재단의 청산금액에 제한되고, Chapter 12, 13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구제가 채무자의 처분 가능한 소득에 제한된다. Chapter 11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서(Plan)에 제시된 변제금액에 제한된다.<sup>15)</sup> 이러한 채권자들에게 있어서 채권의 면책 여부는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 면책은 Chapter 7 사건뿐만 아니라, Chapter 11 과 13 사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성



15) David G. Epstein et al, Bankruptcy(including BAPCPA): 21st Century Debtor-Creditor Law, 125면.

질상 대부분의 면책은 Chapter 7 사건에서 일어나고,<sup>16)</sup>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Chapter 7 사건에서 면책은 오직 개인 채무자에게만 허용된다.<sup>17)</sup>

반대로 비면책 채무는 파산사건이 성공적인 경우에도 채권자는 여전히 법적으로 청구 및 집행이 가능하다. 어떤 채무가 파산면책채무가 되는지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다. 미연방파산법률 즉, 미연방통합법전 타이틀 11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면책채권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면책의 대상이 되는 파산법상 채권(claim)의 개념은 섹션 101에서 “대금청구권(right to payment)으로서 판결에 의한 확정여부, 금액확정 여부, 조건부여부, 만기도래여부, 이의존재여부, 법률상 또는 형평상의 권리여부, 담보부 또는 비담보부 여부를 불문한다”.<sup>18)</sup> 또한 “대금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이행의무위반에 기한 형평상의 청구권(right to an equitable remedy)으로서 판결에 의한 확정여부, 금액확정 여부, 조건부여부, 만기도래여부, 이의존재여부, 담보부 또는 비담보부 여부는 불문한다”.<sup>19)</sup>

여기에서 핵심적인 언어는 대금청구권(right to payment)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이행명령(in-

junction)은 대금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파산법상의 채권(claim)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파산법상 채권의 개념은 Ohio v. Kovacs, 469 U.S. 274 (1985)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에서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위해폐기물 장소의 청소(clean up)명령을 한 경우, 이러한 판결을 받은 주정부(State of Ohio)는 위 판결문상의 채무자의 의무이행명령을 파산법상의 면책채권이나 채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법률논쟁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작위청구권 또는 하는 채무(right to performance)도 11 U.S.C. §101(4)에서의 채권(claim)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파산사건 하에서 본 청소명령이 금전지급의무로 전환된 경우, 마찬가지로 파산법상의 면책 가능한 채권(claim)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면책의 효과는 11 U.S.C. §Section 524(a)(1)과 (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채무확정 판결의 무효화

연방파산법상(타이틀 11)에서의 파산사건에 대한 면책은 파산유형(청산이나 회생: 섹션 729, 944, 1141, 1228 또는 1328)하에서 면책되는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개인책임을 결정한 판결



16) Id., 278면.

17) 마찬가지로 파산집행면제(exemption)도 개인에게만 허락되며 주식회사나 무한회사, 기타 단체에게는 그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파산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파산집행면제도 Chapter 7에서 주로 문제되나 채무자가 개인인 Chapter 11과 13 사건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파산집행면제는 섹션 522에서 규정된다(11 U.S.C. §522).

18) 11 U.S.C. §101(5)(A)

19) 11 U.S.C. §101(5)(B)



을 무효화(voids)한다. 이는 그 채무면책이 포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하다.<sup>20)</sup>

둘째, 채무이행의 재판상 재판외 청구의 정지 연방파산법상(타이틀 11)에서의 파산사건에 대한 면책은 채무자의 개인책임으로서의 채무를 변제 받거나 지급을 받거나 또는 상계하기 위한 소송개시 또는 그 계속 또는 절차나 행위에 대하여 정지명령(injunction)으로서 작동한다.<sup>21)</sup>

## 2. 파산절차상 채권(claim) 승인(allowance)과 면책(discharge)

면책된 채권에는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면제되는 것과 같이, 파산절차상 채권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도 파산절차상의 지급분배를 하지 않게 된다. 섹션 502에 따라 채권승인을 받지 못한 채권(disallowance of a claim)은 Chapter 7 사건에서의 파산재단의 청산으로부터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고, Chapter 11 이나 13 사건에서의 통과된 회생계획(confirmed Plan)으로부터도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된다.

파산절차에서 비담보채권(unsecured claim)은 파산분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인 또는 허가

절차(allowance process)를 거쳐야 한다. 다른 말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채권을 파산채무자로부터 변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채권이 파산절차상 신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권신고 및 인정절차를 승인(allowance)이라 한다. 승인절차의 첫번째는 채권(claim)의 증거(proof)를 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섹션 521상 파산채무자는 채권자 목록(list)을 제출하고, 그 목록상의 채권자는 Rule 2002에 따라 파산통지를 받게 된다. 채권자목록에 의해 채권이 신고된 경우, 이해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목록상의 채권은 파산절차상 승인(allowed)된 것으로 간주된다.<sup>22)</sup>

이해당사자의 채권승인 반대사유는 11 U.S.C. 502(b), (d), (e), (k)에 규정되어 있다. 채권 불승인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섹션 502(b)(1)에 나타나 있다. 그 채권이 파산을 떠난 일반 실체법 상으로도 법원을 통해 소구 가능한 유효한 권리이어야 한다. 즉 실체법상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유 이외에 기타 약정이나 법령에 의하여 소구불능채권인 경우에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채권은 마찬가지로 승인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권 강제 및 집행에 대하여 파



- 20) 11 U.S.C. §524 (a) A discharge in a case under this title (1) voids any judgment at any time obtained, to the extent that such judgment is a determination of the personal liability of the debtor with respect to any debt discharged under section 727, 944, 1141, 1228, or 1328 of this title, whether or not discharge of such debt is waived;
- 21) 11 U.S.C. §524(a)(2) operates as an injunction against the commencement or continuation of an action, the employment of process, or an act, to collect, recover or offset any such debt as a personal liability of the debtor, whether or not discharge of such debt is waived;
- 22) 11 U.S.C. §502(a); Bankruptcy Rule 3001(f).

산 이외의 상황에서 가졌을 방어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승인(allowance of the claim)에 대한 방어가 되기 때문이다.<sup>23)</sup> 채권불승인 사유는 예를 들어,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의 경과, 사기 방지법(statute of fraud) 위반, 대가성결여(failure of consideration)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연방 항소심 법원 판례 중 In re Piper Aircraft Corporate, 58 F.3d 1573 (11th Cir. 1995) 사건에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상 파산 채무자회사의 결함 있는 항공기 부품의 설계, 제작, 판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희생자(아직 현실상 나타나지 않은)의 권리를 파산법상의 채권(claim)으로 볼 수 있는가의 쟁점에 대하여, 미연방 11 서킷 항소심은 미래의 청구권자는 파산법 섹션 101(5)상의 채권(claim)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파산사건상의 채권(claim)이 아니므로 면책(discharge)되지도 않게 되었다.

파산절차상 채권승인(allowance of a claim)에 대한 반대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반대이유서의 사본은 심리통지와 함께 채권자, 채무자 또는 파산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debtor in possession) 또는 파산관재인(trustee)에게 심리 30일 전까지 송부되어야 한다.<sup>24)</sup>

한편, 채권의 불승인(disallowance)은 면책(discharg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

이 전부 또는 일부 승인되지 못한 경우에도 여전히 Chapter 7, 11, 13 사건에서의 면책의 대상은 될 수 있다.

### 3. 면책에 대한 제한

미연방파산법상 면책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른다.

첫째, 면책 주체(채무자)의 제한

파산 사건의 모든 채무자가 면책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사람 이외의 주식회사나 사업체는 Chapter 7의 파산면책을 받지 못한다. 개인도 Section 727(a)의 12가지 테스트 목록(list)에 의하여 Chapter 7의 혜택을 받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위 테스트 목록은 채무자의 파산사건 이전 또는 중간의 부당한 행위(misdeed)에 기초한다.

Chapter 11의 기업회생은 주로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무한회사(partnership)를 위한 것인데, 면책은 법원의 기업회생계획(Plan of reorganization)에 대한 승인여부에 달려 있다. Section 1141(d)에 따라 기업들의 면책허가는 위 회생계획에 대한 인정(Confirmation of a plan)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Chapter 13의 개인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대한 승인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법적으로 면제될 것, 그리고 재



23) David G. Epstein et al, Bankruptcy(including BAPCPA): 21st Century Debtor-Creditor Law,126면.

24) Bankruptcy Rule 3007.



## 맞춤형 법제정보

정관리 과정이수(a course on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등이 충족된 경우에만 면책이 허가된다.

둘째, 면책채무의 종류에 대한 제한

면책은 채무자를 그의 '모든 채무(all debts)'에 대한 개인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키지 않는다. 면책은 오직 면책 가능한(dischargeable) 채무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다. 채무가 면책성이 있는지는 해당 파산사건이 Chapter 7 사건인지, Chapter 11 사건인지 또는 Chapter 13 사건인지, 채무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그 채무가 면책으로부터 제외된 채무인지(11 U.S.C. §523) 등에 달려 있다.

셋째, 채무자의 개인적 채무 면책에 한정(제3자의 보증책임과 담보부 책임은 영향 없음)

면책은 채무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면책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에 대한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이다. 즉, 채무자의 채무면책은 그 채무에 대한 다른 자(any other entity)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채무를 위한 다른 자(any other entity)의 재산상의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sup>25)</sup> 그러므로 동일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과 동일채무에 대한 담보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

라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채권자는 여전히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채무자의 면책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가 부동산 등의 저당권설정이 된 경우, 채무자의 면책은 담보부채권의 채권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담보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즉, 미국파산법은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기한 담보물의 압류나 경매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담보나 압류(lien), 예를 들어 부동산 모기지나 자동차할부담보 등은 청산절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 담보물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 채권자는 완전히 보호된다.

단, 파산법은 담보채권자의 압류나 경매행위를 파산신청의 효과인 '자동청구정지(automatic stay)<sup>26)</sup>'에 기속되게는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보채권자는 자동청구정지조치로부터 면제(relief)를 받아야만 담보물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



25) 11 U.S.C. §524(e)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a)(3) of this section, discharge of a debt of the debtor does not affect the liability of any other entity on, or the property of any other entity for, such debt.

26) 자동청구정지(automatic stay)란 11 U.S.C. §362(a)하에서 채무자에 의한 Chapter 7, 11, 12, 13 파산신청이나 제3자에 의한 비자발적 chapter 7 파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자동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 채무자의 재산, 파산재단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채권의 청구나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제한 받는 법률상의 효과이다. 이는 파산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의 집행행위로부터 채무자를 즉시 보호하는 파산법상의 파산신청효과라고 볼 수 있다. 자동청구정지는 파산신청의 효과이며 따로 법원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11 U.S.C. §362(a)는 자동청구정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채권자의 채권청구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지원의무(domestic support obligation)에 기한

다. 한편, 담보권자는 담보물 및 담보물의 매각잔액으로부터 우선적 권리를 인정받는다.

#### IV. 면책의 비허가 및 비면책채권

##### 1. 면책 비허가 사유

섹션 727(Discharge)는 (a)에서 12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용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12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12가지 면책 비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11 U.S.C. §727 (a)(1))
- (2) 채무자가 채권자나 파산재단의 관리인을 방해하거나 지연또는 속이려는 의도로 파산신청일 전 1년 내에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 제거, 훼손, 멸실 또는 은닉한 경우, 파산신청일 후 파산재단에 대한 상기의 행위도 마찬가지이다(11 U.S.C. §727(a)(2)).
- (3) 채무자가 기록된 정보(장부, 문서, 기록부, 종이서류 등 채무자의 재정상태 또는

사업거래가 확인될 수 있는 것 포함)를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없이 은닉, 훼손, 멸실, 거짓기재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11 U.S.C. §727(a)(3))

- (4)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거짓으로 파산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증언이나 설명을 한 경우, 거짓 주장이나 청구를 한 경우,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금전, 재산이나 이득 등을 주거나, 제시 또는 취득하고자 한 경우, 본 타이틀상 점유권한이 있는 파산재단의 관리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이나 재정상태에 관한 기록된 정보(장부, 문서, 기록부, 종이서류 등 포함)를 거부한 경우(11 U.S.C. §727(a)(4))
- (5) 채무자가 본 섹션에서의 면책 거부결정 이전에 채무자의 책임자산이 상실 또는 부족한 경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11 U.S.C. §727(a)(5))
- (6) 채무자가 파산사건에서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증언 명령은 제외), 채무자가 자기부죄거부특권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



채무와 같은 것은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채무자(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행위나 집행행위도 자동청구정지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11 U.S.C. §362(c)는 자동청구정지가 효력이 종료하는 사정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구성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재산의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파산사건이 종료되거나 기각되거나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discharge)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최근 1년 내 파산신청 경력 등. 한편, 11 U.S.C. §362(d)~(g)하에서 Chapter 11, 13 사건의 채권자들은 연방파산규칙(Bankruptcy Rule) 4001에 따라 자동청구정지 효과로부터 구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파산법원은 이해당사자의 재산권에 대한 적정보호(adequate protection)의 결여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청구정지 효과의 종료를 명령하거나 조건을 명할 수 있다.

하여 면제(immunity)된 후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이유로 법원이 승인한 중요 질의에 대해 답변하거나 증언할 것을 거부한 경우,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적절하게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 경우, 법원이 승인한 주요질의에 답변하거나 증언할 것을 거부한 경우 (11 U.S.C. §727(a)(6))

- (7) 채무자가 파산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또는 파산사건 진행 중 내부자와 관련한 본 타이틀 또는 파산법률과 관련하여 위 (2), (3), (4), (5) 또는 (6)에 규정된 행위를 행한 경우(11 U.S.C. §727(a)(7))
- (8) 파산신청일 이전 8년 이내에 개시된 파산사건에서 채무자가 본 섹션과 섹션 1141 또는 파산법률(Bankruptcy Act) 섹션 14, 371 또는 476 하에서 면책을 부여 받았던 경우(11 U.S.C. §727(a)(8))
- (9) 파산신청일 이전 6년 이내에 개시된 사건에서 본 타이틀 섹션 1228 또는 1328 또는 파산법(Bankruptcy Act) 섹션 660이나 661 하에서 면책을 부여 받았던 경우(상기 파산사건상 파산계획(plan)상의 변제액이 그 사건에서 승인된 비담보채권의 100퍼센트가 되지 않거나 70퍼센트가 되지만 파산계획이 채무자의 신의에 기하여 제시되지 않고 채무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하지 않을 것)(11 U.S.C. §727(a)(9))
- (10) 본 chapter 5하에서 구제명령 이후 법원이 채무자에 의한 면책포기서를 승인한 경우 (11 U.S.C. §727(a)(10))

(11) 파산신청 후, 채무자가 섹션 111의 개인재무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11 U.S.C. §727(a)(11))

(12) 면책승인 명령일 이전 10일 내에 열린 통지 및 심리 후 법원이 다음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발견한 경우: 즉, 섹션 522(q)(1)(채무자의 파산신청 남용관련 중범죄 유죄 확정)이 채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고, 채무자가 섹션 522 (q)(1)(A)상의 중범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11 U.S.C. §727(a)(12))

한편, 11 U.S.C. §727(c)에 의거 파산관재인 (Trustee), 채권자 또는 미연방정부의 파산관재인은 본 섹션(a)의 면책허가에 반대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명령하여 면책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와 행동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11 U.S.C. §727(c)).

또한, 11 U.S.C. §727(d)에 의거 파산관재인 (Trustee), 채권자 또는 미연방정부의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그리고 통지 및 심리 후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본 섹션 (a)에서 허용된 면책을 취소하여야 한다: 즉, 그 면책이 채무자의 사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요청하는 당사자가 상기 면책이 허가된 후까지 그 사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 또는 파산재단의 재산을 채무자가 획득하거나 획득할 권리를 얻게 되고 고의 및 사기적으로 상기 재산취득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상기 재산을 파산관재인에게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본 섹션 (a)(6)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충분히 타이틀 28의 section 586 (f)에 규정된 감사(audit)에서 했던 중요한 오진술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모든 필요한 회계장부, 문서, 서류, 재무기록, 자료 및 기타 서류로서 section 586 (f) of title 28에서 규정된 감사에서 요구된 채무자에게 속한 기타 자료를 조사(inspection)과정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경우. 이상 (11 U.S.C. §727(d))

파산관재인(Trustee), 채권자 또는 미연방정부의 파산관재인은 면책이 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 섹션의(d)(1)에 근거하여 면책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면책허가 후 1년 또는 파산사건 종결 이전에 (d)(2) 또는 (d)(3)에 근거하여 면책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11 U.S.C. §727(e)).

## 2. 비면책채무(Exceptions to Discharge)

파산절차에 상관없이 일정한 채무 또는 채권은 위의 면책(discharge)을 받지 않는다.

11 U.S.C. §523 면책에 대한 예외(Exceptions to Discharge)는 비면책채무를 규정하고 있고, 11 U.S.C. §507은 비면책채무의 지급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비면책채무(Exceptions to discharge)는 Chapter 5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hapter 7, 11, 13 파산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1) 비면책채무의 종류

Chapter 7, 11, 13 파산사건에 공통된 면책 예외채무, 즉 비면책채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세금(tax or customs)채무로서 상

기 11 U.S.C. §507 (a)(3)과 (8)에 규정된 종류와 기간의 세금채무 또는 세금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파산신고 전에 세금신고의무기간 경과 후 2년 후에 신고가 비로소 이루어진 세금채무 또는 채무자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거짓으로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세금채무(11 U.S.C. §523 (a)(1))

- 법령상의 청구제한기간(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을 넘지 않은 소득세(debts for income taxes that are not older than statutory limits);
- 금전, 재산, 용역 또는 신용의 연장, 갱신 또는 변경 등에 관한 채무로서 채무자의 거짓 표시나 사기행위(채무자 또는 내부자의 재정상태에 관한 발언은 제외) 등으로 획득된 것(11 U.S.C. §523 (a)(2))
- 섹션 521(a)(1)의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자 목록에 없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고 있는 채무(11 U.S.C. §523 (a)(3))
- 신탁관계상의 사기나 위탁금의 유용 또는 횡령 또는 절도를 통해 발생한 채무(11 U.S.C. §523 (a)(4))
- 가족생활지원의무에 기한 채무(debts for a domestic support obligation)(11 U.S.C. §523 (a)(5));
- 채무자가 다른 자 또는 다른 자의 재산에 끼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손상에 대한 채무 (11 U.S.C. §523 (a)(6))
- 정부단체에 지급해야 하는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금 채무로서 세법상의 벌금을 제외

하고 실질적인 금전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11 U.S.C. §523 (a)(7))

- 채무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나 채무자의 자녀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 한, 정부지원 또는 비영리단체지원의 학자금융자 채무(11 U.S.C. §523 (a)(8)(A)(i))
- 채무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나 채무자의 자녀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 한 학자금 지원, 장학금, 기타 생활비 지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11 U.S.C. §523 (a)(8)(A)(ii))
- 채무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나 채무자의 자녀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 한, 미연방 파산법상의 학자금 융자가 되는 모든 학자금 융자 채무(11 U.S.C. §523 (a)(8)(B))
- 알콜, 마약, 기타 약물 사용으로 만취됨으로써 위법인 자동차운전, 선박운항, 비행기 탑승 등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채무(11 U.S.C. §523 (a)(9))
- 본 타이틀의 섹션 727 (a)(2), (3), (4), (5), (6), 또는 (7) 상 면책이 거부되거나 채무자가 면책을 포기한 이전의 파산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목록에 신고했거나 신고할 수 있었던 채무(11 U.S.C. §523 (a)(10))
-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의 최종확정판결, 확정명령, 또는 동의명령이나 결정에 의한 채무로서 연방은행규제기관(Federal depositary institutions regulatory agency)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 또는 채무자가 체결한 화해계약상의 채무 등으로서 채무자가 신탁관계를 갖는 예금기관 등에 대해 사기행위를 함으로서 발생한 채무(11 U.S.C. §523 (a)(11))

- 연방예금기관에 대한 채무자의 약정(예금보험이 인정되는 금융기관의 자산을 유지하여야 하는)을 채무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채무(11 U.S.C. §523 (a)(12))
- 미연방통합법전 타이틀 18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원상회복 또는 반환명령에 따른 변제 채무(11 U.S.C. §523 (a)(13))
- 비면책 세금(a non-dischargeable tax debt)을 납부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11 U.S.C. §523 (a)(14))
- 연방선거법(Federal election law)상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11 U.S.C. §523 (a)(14B))
- 위 11 U.S.C. §523 (a)(5)에 규정된 종류가 아닌 채무자의 배우자, 이혼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채무로서 이혼이나 별거 과정 중에 발생하거나, 이혼약정, 별거약정 또는 기타 법원의 명령 또는 정부기관이 주법 등에 의하여 내린 결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발생한 채무(11 U.S.C. §523 (a)(15))
- 파산구제명령 이후 채무자의 아파트 소유나 주택부지 소유(채무자가 법적, 형평상 또는 점유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에 따른 아파트관리단이나 주택관리단에 대한 관리비 등의 채무(11 U.S.C. §523 (a)(16))



- 교도소 수감자에게 소송의 제기, 주장, 항소 또는 기타 소송제기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제비용에 대한 채무(11 U.S.C. §523 (a)(17))
- 1986년 미연방세법의 섹션 401, 403, 408, 408A, 414, 457 또는 501(c) 상 수립된 연금, 이익분담(profit sharing), 주식보너스(stock bonus) 등에 대한 채무(11 U.S.C. §523 (a)(18))
- 연방증권법 위반으로 인한 채무(11 U.S.C. §523 (a)(19))

(2) 11 U.S.C. §§507. 비면책채무 지급우선순위 (Priorities)

파산사건에서 채권액은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섹션 507(a)는 우선순위를 열거함으로써 특정 비담보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파산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채무자의 채무 중에서 면책되지 않는 상기의 비면책채무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른다(11 U.S.C. §507(a)). 주의할 것은 각 우선순위의 채권은 후순위 채권이 만족되기 이전에 전액 지급된다. 채권자들 사이에는 지급우선순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섹션 510(a)는 이러한 후순위승인합의서(subordination agreement)는 파산법 이외의 법령상 유효한 것과 같

이, 본 타이틀 파산사건 하에서도 유효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sup>27)</sup>

첫째, 비담보채권으로서 가족관계상 생활지원비 채무, 파산신청 일부로 배우자 또는 이혼배우자와 채무자의 자녀, 그 자녀의 부모, 법률상 후견인(legal guardian) 또는 책임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가족관계상 생활지원비 채무는 채무자 재산 중 첫 번째로 분배 지급해야 할 채무이다. 위 채권자들이 위 지급채권을 정부기관에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다.<sup>28)</sup> 하지만, 섹션 510(c)은 섹션 510(a)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통지와 심리(notice and hearing) 이후 법원은 형평상의 순위 차등화(equitable subordination) 원칙에 기하여 분배목적상 허가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9)</sup>

둘째, 섹션 503(b)에서 인정된 행정처리비용 채무,<sup>30)</sup> 즉 파산재단을 보전하기 위한 실질필요 비용으로서 파산채무자의 파산신청일 이후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 전미노동관계위원회의 사법절차에서 결정된 채무자의 연방 또는 주법 위반의 결과 파산신청 이후의 기간 동안 지급이 지체된 용역대가, 507(a)(8)에 규정된 종류의 세금을 제외한 파산재단에 부과된 재산세 등 기



27) 11 U.S.C. §510. Subordination (a) A subordination agreement is enforceable in a case under this title to the same extent that such agreement is enforceable under applicable nonbankruptcy law

28) 11 U.S.C. §507. Priorities (a)(1)

29) 11 U.S.C. §510. (c)

30) 11 U.S.C. §507. Priorities (a)(2); 11 U.S.C. §503. Allowance of administrative expenses (b)



타 제세공과금, 이러한 제세공과금과 관련한 벌금 또는 과태료, 파산절차 소요행정인원에 대한 보상, 즉 파산관재인(trustee), 소비자 사생활 옴부즈만(consumer privacy ombudsman), 검사인(examiner), 전문인(professional person), 변호사 등에 대한 합리적인 실질용역대가,<sup>31)</sup> 변호사나 회계사가 수행한 전문적인 용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sup>32)</sup>, 섹션 303에 근거하여 채권자가 청원(petition)을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실질필요비용, 채무자의 은닉 및 제3자 이전재산을 파산재단 안으로 복구한 채권자의 실질필요비용, 채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에 관한 형사소송제기에 채권자가 소모한 비용 등<sup>33)</sup>이 그것이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11 U.S.C. §503.에 규정되어 있다.

셋째, 502(f)에서 인정된 비담보채권<sup>34)</sup>

넷째, 비담보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사업 종료일 또는 파산신청일 중 빠른 날짜의 180일 전에 발생한 개인이나 회사 채권자의 채권으로서 USD\$10,000 범위내의 임금채권(봉급, 또는 월급으로서 휴가수당, 해고수당, 병가 휴가수당 포

함)<sup>35)</sup> 또는 상기 일의 1년 전에 1인 회사나 개인이 독립계약자로서 채무자에게 물품판매나 용역제공을 한 판매수수료(Sales Commissions)의 75%를 벌어들인 판매나 용역대금<sup>36)</sup>

다섯째, 근로자 복지플랜에 대한 채무자의 기여금 지급채무(비담보)로서 채무자의 사업 종료일 또는 파산신청일 중 빠른 날짜의 180일 전에 발생한 것. 단, 이러한 지급채무는 개별 플랜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수에 USD\$10,000를 곱한 값에서 위 네 번째 항목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총액과 그 근로자를 위하여 파산재단으로 근로자복지플랜에 지급하는 총액을 더한 값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sup>37)</sup>

여섯째, 곡물창고시설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섹션 557(b)에 규정된 곡물 생산에 종사하는 자들의 곡물 또는 곡물매출에 관한 비담보채권<sup>38)</sup> 또는 매매나 conversion를 통하여 어부로부터 어류나 어류생산물을 획득한 채무자에 대하여 미국 어부로 종사하는 자들의 비담보채권<sup>39)</sup> 단, 각 채권은 각 개인에 대하여



- 31) 11 U.S.C. §330. Compensation of officers (a)
- 32) 11 U.S.C. §503. Allowance of administrative expenses (b)(4)
- 33) 11 U.S.C. §503. Allowance of administrative expenses (b)(3)
- 34) 11 U.S.C. §507. Priorities (a)(3)
- 35) 11 U.S.C. §507. Priorities (a)(4)(A)
- 36) 11 U.S.C. §507. Priorities (a)(4)(B)
- 37) 11 U.S.C. §507. Priorities (a)(5)
- 38) 11 U.S.C. §507. Priorities (a)(6)(A)
- 39) 11 U.S.C. §507. Priorities (a)(6)(B)

USD\$4,000를 한도로 한다.

일곱째, 파산사건 이전에 각 개인의 개인적, 가족적, 가사적 사용을 위해 재산의 구매, 임대, 임차 또는 용역거래(하지만, 이상의 거래객체가 인도되거나 제공되지 않은)와 관련하여 금전의 예탁(deposit of money)으로부터 발생하는 비담보채권 이때 각 개인에게 USD\$1,800까지 인정된다.<sup>40)</sup>

여덟째, 정부기관의 비담보채권으로서 청구권이 파산신청일 이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것인 경우,<sup>41)</sup> 그리고 파산사건 개시(commencement of the case) 이전에 발생하고 1년 후 마지막으로 벌금 없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로서 파산신청일 이전의 것<sup>42)</sup> 또한 채무자가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기타 세금,<sup>43)</sup> 채무자로부터 벌어들인 11 U.S.C. §507. Priorities (a)(4)에서 규정된 봉급 또는 월급에 대한 고용세(employment tax),<sup>44)</sup> 파산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sup>45)</sup> 파산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소비를 위해 반입된 물품수입에 대한 관세(a cus-

tom duty),<sup>46)</sup> 실질 금전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11 U.S.C. §507. Priorities (a)(8)에 규정된 종류의 청구권(채권)관련 벌금<sup>47)</sup>

아홉째, 보험에 가입된 예금기관의 자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방예금은행규제기관에 한 채무자의 약정에 기한 비담보채권<sup>48)</sup>

열째, 자동차나 선박의 운용 결과 발생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채무자가 알콜, 마약 또는 기타 물질로 인하여 취함으로써 상기 운용이 불법적인 경우<sup>49)</sup>

#### IV. 맺는 말

미국파산법은 fresh start의 입법취지에 따라 청산파산과 회생파산 모두의 유형에 공통적으로 면책(discharge)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면책에 의해 직접적인 개인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40) 11 U.S.C. §507. Priorities (a)(7)

41) 11 U.S.C. §507. Priorities (a)(8)(A)

42) 11 U.S.C. §507. Priorities (a)(8)(B)

43) 11 U.S.C. §507. Priorities (a)(8)(C)

44) 11 U.S.C. §507. Priorities (a)(8)(D)

45) 11 U.S.C. §507. Priorities (a)(8)(E)

46) 11 U.S.C. §507. Priorities (a)(8)(F)

47) 11 U.S.C. §507. Priorities (a)(8)(G)

48) 11 U.S.C. §507. Priorities (a)(9)

49) 11 U.S.C. §507. Priorities (a)(10)

## 맞춤형 법제정보

청구 및 집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파산법상의 면책은 면책대상 채무에 대한 제3자의 보증채무나 그 채무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파산법상의 면책은 채무자의 개인책임만을 면제시키는 상대적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미연방파산법상 면책채권의 확정을 위해 먼저 파산법상의 채권(claim)의 개념이 대금지급청구권이나 근로의 전환이 가능한 권리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면책의 효과는 채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가의 여부, 파산사건의 유형이 Chapter 7, 11, 13 사건인지의 여부, 채무자의 절차상의 성실성 여부, 파산절차의 남용여부,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한편, 대표적인 비면책채무로서 채무자가 파산승인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여야 하는 채

무는 세금채무, 채무자의 사기 등 거짓행위에 의한 채무, 가족생활지원 채무, 타인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 채무, 연방증권 등 위반으로 인한 채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비면책채무 사이에는 지급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다.

**유진호**

(미국변호사, 외국법제조사위원)